

요즘 언론계나 학회 주최 세미나의 제목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생태계’ 변화다. 이는 최근의 변화가 단순히 특정 언론 환경이나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언론의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를 매개로한 여러 사회 제도나 기구 또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대상, 범위와 내용, 속도 등이다. 언론의 경우 아예 일차적인 개념의 재정의(Redefinition)부터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발제자는 변화하는 환경, 특히 현재의 ‘온라인, 인터넷환경’에 부응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자세하게 제안하고 있다. 첫째,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공간이나 기사댓글란과 같은 게시판(bulletin board) 또는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의 공개광장(public forum)’과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과 같은 이른바 전자언론’의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과 둘째, 이러한 전자공간에서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도모하자는 제안, 셋째, 원스톱 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절차의 일회적·유기적 해결 제안, 넷째, 공직선거법상 피해구제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큰 이의 없이 동의한다. 다만, 개선 논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침해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절차가 있다는 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정책결정을 통해 자율적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과 언론중재법 간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창구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해 ‘침해 상태의 제거, 장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오히려 ‘언론의 표현자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포털사의 자율적인 조치

(기사 하단 <신고하기> 버튼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있는데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기사 댓글 이외의 댓글에 대해서도 댓글말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많은 댓글에 대해 현행과 같은 신속한 처리 기간 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발제자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삭제청구권의 청구기간과 관련된 문제다. 새로운 입법으로 언론사의 과거 기사에 대해 삭제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이외에도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사 삭제와 별도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사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원 보도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언론사로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청구라는 비판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그런 중재 사례 경험도 있었다.

넷째,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언론중재법을 개선하더라도, 특히 공직자, 공적인 인물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좀 더 확실히 정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는 사실적 주장뿐 아니라 그 사실적 주장의 전파와 의견 표현(논평 등)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국한하는 것은 최근의 보도 경향 추세를 감안할 때 재고와 대안 마련의 대상이다. 사진과 영상자료를 첨가한 심층보도 등 이전에 비해 사실과 논평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보도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조정이 되거나 조정대상기사가 남아있는 경우 정정·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반론보도를 이어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정대상기사도 삭제하고 정정·반론보도도 게재하거나 정정·반론보도를 일정 기간 게재한 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예외적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보도’ 관련 조정신청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집단적 차원의 공격적인 대규모 언론조정신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번 대량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아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형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다수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피해구제에 기반을 둔 특정사건에 심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차제에 언론조정 및 중재제도의 선용은 더욱 권장해야 하지만, 남용과 오용의 경우를 구분해 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